

대학원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운영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20.8.24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대학원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이하 '우리 대학원'이라 한다)과 협정을 맺은 국내·외 타 대학교 대학원(이하 '상대 대학원'이라 한다) 및 본교 내 학과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교류를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4.>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우리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설치·운영하는 교과과정을 국내·외 타 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24.>
2. '공동학위(Joint Degree)'란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양 대학교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3. '복수학위(Dual Degree)'란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에서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 대학원의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교에서 별도의 학위증서를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4. 교내 복수학위란 신청학생이 소속한 학과와 취득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해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 학과의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복수의 학위증서를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신설 2020.8.24.>
5. 융합학과란 학문간 융합을 목적으로 신설된 학과를 말한다. <신설 2020.8.24.>
6. 복수학위학과란 원 소속학과 외에 추가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과를 말한다. <신설 2020.8.24.>

제2장 국·내외 타 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3조 (운영주체 및 협정체결) ① 제2조 제1호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본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교 대학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8.24.>

② 제2조의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는 본교와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8.24.>

③ 협정서에는 국내·외 대학교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학문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4.>

④ 학위과정에 관한 협정체결은 미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지원자격 및 선발)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의 자격과 선발 절차는 대학 간 협정서에 따른다.

제5조 (수학기간) ①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대학원생의 본교 수학기간은 최소 1년(2학기) 이상으로 한다.

②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 대학원에서 동등한 기간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정에 명시되었거나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교과과정의 이수) ① 우리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이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려면, 양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우리 대학원의 상대 대학원 학점인정의 범위는 대학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른다. (최대 12학점 인정)

1.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대학원생은 상대 대학원에서의 수학기간이 종료된 후, 우리 대학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상대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을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수 교과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공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③ 상대 대학원의 우리 대학원 학점 인정의 범위는 대학간에 체결한 협정서의 학점인정 범위에 따른다.

제7조 (등록) 본 규정에 의거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학기 우리 대학원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8조 (장학금)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협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우수한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학위논문 자격시험 면제)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대학원생의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대학간 협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학위취득 요건)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협정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은 우리 대학원과 상대 대학원의 학위논문으로 별도 심사절차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정에 따라 상대 대학에서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경우 본 대학 학위논문 심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제출한 논문을 우리 대학원의 학위로만 인정할

수도 있다.

④ 복수학위의 논문은 두 대학에서 모두 보관 관리한다.

제11조 (협정서) 협정서는 본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교내 복수학위 <신설 2020.8.24.>

제12조 (교내 복수학위 과정) 교내 복수학위(이하 '복수학위'라 한다)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3조 (지원자격) 복수학위 지원은 융합학과 소속 학생에 한하며, 직전학기까지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방법 및 선발) ① 복수학위 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복수학위과정 신청자는 별도의 전형과정을 거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한다.

제15조 (교과과정, 이수학점) ① 융합학과와 복수학위학과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각각 24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지도학점은 매학기 2학점씩 이수하여야 하며, 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융합학과로 전과한 학생이 전과 이전 학과로 복수학위를 하는 경우 전과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을 복수학위학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학점인정) 융합학과와 복수학위학과에서 각각 이수한 학점은 양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점인정은 해당학과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자격시험) ①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는 종합시험과 영어시험이 있다.

② 융합학과와 복수학위학과 각각 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교과학점 15학점 이상(학점인정 교과 포함)

2. 성적의 평점평균 3.0 이상

③ 영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융합학과와 복수학위학과 각각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8조 (논문제출 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4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자
2. 교과학점을 24학점(당해학기 취득 예정 및 학점인정 포함)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3. 연구지도학점 8학점을 취득한 자
4. 영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융합학과 및 복수학위학과에서 각각 설정한 연구실적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에 합격한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제19조 (학위취득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취득 자격을 가진다.

1. 소정의 교과학점과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수업연한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자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서 합격 판정된 자. 단, 복수학위학과의 논문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융합학과는 교과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20조 (복수학위의 중도포기) ① 복수학위를 중도포기할 경우 복수학위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복수학위를 포기하는 경우 융합학과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4장 준용 규정

제21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교와 상대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따른다.

[종전 제12조에서 제21조로 변경 <2020.8.24.>]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3.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